

高麗時代 侍衛制度에 관한 史的考察

A Social Historical Study on Security System of Goryeo Period

김창호* · 민재기**

<목 차>

I. 서론	III. 고려시대의 시위제도
II. 고려시대의 군제 및 치안	IV. 결론

<요약>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 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증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시위, 시위군, 중앙군, 중방, 도방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 이학박사(제1저자)

** 동서울대학 스포츠경호학부 겸임교수(공동저자)

I. 序 論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상(政治制度上) 국왕(國王) 및 대통령, 국가 주요인사 등은 대외적(對外的)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안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保衛)하고 헌법을 수호(守護)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경호활동(警護活動)은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각종위험이나 테러행위 등으로부터 완벽한 신변보호(身邊保護)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 사회 혼란을 야기하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함께 중대한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과거사를 돌이켜 볼 때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警護)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현재의 지리적 상황에서 시위기관의 완벽한 업무대행은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의 시위대행은 국가체제나 시대를 초월해서 국왕이나 국가의 최고권력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및 권위유지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하였다**.

특히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정시대에는 국가 개인의 신변뿐만 아니라 왕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시위수단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새로운 왕권의 창출 때는 반대 세력에 의한 쿠데타나 당쟁 등으로 인한 권력암투가 심화되었을 때는 국왕자신이 신변에 대한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시위 즉, 호위조직을 만드는 등 신변보호에 주력하였다. 특히 고려 5백년의 역사는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독자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고려는 그 역사상 과도적이고 중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다. 즉 신라시대의 정치·문화·사회 등 제제도가 고려시대에도 정비의 과정을 밟으면서 의연히 그 줄거리는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계승이나 정비가 아니라 가일층의 개량과 발전을 내포한 계승으로써, 시위의 제도에 있어서도 다소의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왔다.

단지 제제도의 전체적 견지에서 보면 이 시대의 시위는 아직도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국가의 타 행정부분에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자연히 시위행정이 군사행정과 혼동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위활동 목표와 상당한 연관성(聯關性)을 가지고 수

* 이충수, 조선왕조시대 시위제도의 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충수, 전개서

*** 김두현,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 2001

행된 고려시대의 시위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의 시위조직 및 작용과 그 실제상(實際上)의 운용(運用)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적 변천의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사적(史的)인 자료(資料)가 빈곤함을 인정하면서 관련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위군(侍衛軍)의 개념을 왕권의 강화라는 전제하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시위군의 기능과 그 조직이 병제상(兵制上)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찰(考察)해 봄으로서 그 면모를 뚜렷하게 밝혀 보고자 하는데 그 연구(研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II. 高麗時代의 軍制 및 治安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 고려를 개국 창건한 태조대(太祖代)는 아직은 지방사회에 대한 정부권력의 침투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에 활거하고 있던 호족(豪族)들을 포섭하여 집권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이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새로이 정비된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으며, 지방군은 국경 지방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1. 高麗의 軍事制度

고려 전기의 중앙군(中央軍)은 전형적으로는 2軍 6衛라 총칭되는 8개 부대로 편제되어 있었다. 2군(軍)은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 그 병력규모는 3천 명이었고, 6위는 좌우위·신희위·홍위위·금오위·천우위·감문위 등으로 그 병력 규모는 4만 2천명 이었다. 고려시대의 군사제도의 연혁을 기록한 『高麗史』兵志에 의하면 2군 6위보다 상위의 부대들이었지만 그 설치시기는 6위보다 나중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군주의 행적을 기록한 <高麗史>世家에 의하면, 중앙에 6위가 설치된 것은 태조 2년의 일이었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6위의 설치시기를 성종 14년으로 보고, 2군은 현종 대에 증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군은 도(都)와 계(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도의 주현군 중 보승과 정용은 주현군의 핵심으로 치안(治安)·방위(防衛)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품군(一品軍)은 노농 부대로서 공역(工役)에 동원되었다, 양계는 국경지대의 군사적 지역인 만큼 진마다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을 중심으로 한 정규군이 주둔하였다. 주현군은 947년(정종 2)에 광군(光軍)이 그 효시가 된다. 주현군은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군인이었다****.

1) 中央軍

(1) 2軍 6衛

왕조 개창기이자 전란기였던 태조 시기는 지방사회에 대한 정부권력의 침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태조대의 경군 조직은 무엇보다도 그 같은 시대적 여건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태조의 후계자들은 지방사회에 대한 중앙의 정치 군사적 통제력을 계속 강화시켜 정부직속군의 규모·편제 등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성립된 고려조의 정형화된 중앙군제가 2군 6위 제도였다. 2군 6위란 중앙군을 이루는 8개 부대의 총칭으로서 2軍은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을, 6위(衛)는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天牛衛) 그리고 감문위(監門衛)를 가리킨다.

지위 상으로는 2군이 6위보다 상위의 부대들이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6위가 2군보다 먼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편제 병력의 규모 또한 2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편제상으로 보면, 중앙군 전체병력 45,000명중 42,000명이 6위에 소속되었다. 6위를 주축으로 하는 이 같은 중앙군 조직은 왕조 개창기인 태조대의 경군 조직과 비교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중앙군의 제도적 형식이 당의 중앙군인 부위제도(府衛制度 혹은 府兵制度)를 모델로 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편제병력의 규모가 대폭 증간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변화는 광종때부터 중국식 국가체제를 모델로 추진된 집권화 정책의 한 결과로서 이해된다. 2군은 국왕에 대한 의장과 시위를 전담하는 친위군 부대들이었다. 2군의 상대장군은 근장상·대장군으로, 장군은 친종장군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근장과 친종은 의장과 시위를 뜻한다. 이와 같은 2군의 임무가 국왕을 측근에서 호위하고 의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친위군 부대의 지위는 6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2) 地方軍

(1) 州縣軍과 州鎮軍

고려시대 지방군은 남방 5도 및 경기의 주현군(州縣軍)과 북방의 양계에 주둔한 주진군(州縣軍)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주현군은 지방제도의 정비과정과 더불어 성립되었는데 국초 호족의 지휘하에 있던 광군(光軍)과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된 진수군(鎭守軍)이 모체가 되어 현종 9년(1018)에 완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종(定宗) 2년(947)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 30만이 조직되었다. 그 통수부는 광군사(光軍司)였으며, 광군도감으로 바뀌었다가 현종 2년(1011)다시 광순사로

**** 김창호, 한국경호발달사, 백산, 2006, p.79~82

되었다. 광군은 농민들로 구성된 예비군으로 공역(工役)부대의 역할을 하였다. 이점은 현종 1년에 시작하여 2년에 완성된 경북 개심사(界心寺)석탑을 쌓는 데 광군이 동원된 사실로 알 수 있다. 호족 지휘하에 있었던 광군이 주현군으로 변모하는 계기로 주목되는 시기는 성종 14년(995)을 꼽을 수 있다. 성종 14년에는 종래 12주목(州牧)이 12軍 절도사제(節度使制)로 바뀌었다. 이 절도사 휘하의 12군 편제에서 주현군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광군은 위에서 말했듯이 현종 1년~2년까지는 그대로 존속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려의 지방제도가 일단락 되는 현종 3년과 9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주현군 가운데 일품군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광군과 함께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치된 진수군이 또한 주현군 형성이 한 요소가 된 것 같다. 국초 태조 이래로부터 지방의 요지에는 도호부(都護府)와 도독부(都督枝)를 설치하고 중앙군을 주둔시켰다. 성종14년에는 군사력에 의한 중앙집권의 강화를 위해 12주목(州牧)에 12군 정도사를 파견하였다. 현종 3년(1012)에는 성종 14년 이래 지속되어 오던 12군 절도사를 혁파하고 그 대신 5도호(都護)·75도(道) 안찰사(按撫)使를 설치하였다. 절도사에서 안찰사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지방에 대한 군사적 감찰이라는 성격이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5도와 경기의 군사도(軍事道)에 소속된 주현군의 군액(軍額)은 보승군(保勝軍) 8,601명, 정용군(精勇軍) 19,754명, 일품군(一品軍) 19,882명 등 총 48,237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대는 보승군과 정용군이다. 그리고 동일한 주현군 소속이라 할지라도 그 기원을 달리 하는 보승·정용군과 일품군은 구별이 되었다. 보승군과 정용군의 임무가 전투와 방위(防衛) 및 치안유지였는데 비하여 일품군은 노동부대였다. 1품군은 2·3품군과는 달리 보승·정용군과 함께 중앙정부에 의해서 1품군의 인원수가 파악되고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되는 부대였다. 1품군의 지휘관은 향리가 겸임하였다.

「付留」즉 촌을 단위로 해서 배치된 2·3품군은 노동부대였다. 2·3품군의 지휘관에는 향리가 아닌 부장촌정(付長村正)이 임명되었다.

양계(兩界)지역에는 안북대도호부(寧州, 북계)와 안병도호부(登州, 동계)의 관할 아래 주(州)·진(鎭)을 중심으로 행정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그 양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주진군이다. 『高麗史』에 의하면 북계에는 각 주·진에 도령중랑장(都領中郎將) 이하 대정(隊正)까지의 지휘관과 그 휘하에 초군(秒軍)인 정용(精勇)·좌군(左軍)·우군(右軍) 및 보창군(保昌軍) 등의 군인을 합하여 40,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여기에 다시 신교(神驕)·보반(步班) 2,000명, 백정(白丁) 61,00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계에는 도령(都領)·랑장(郎將) 등 장교 780명 정도에다 초군·좌군·우군 및 령새(寧塞)를 합하여 모두 11,500명 정도에 공장·전장·역화·천군·사공 등 특수군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진군의 핵심이 되는 부대는 초군·좌군·우군과 보창군·영새군 이었다. 초군·좌군·우군은 마대(馬隊)가 포함되어 있는 정예 부대였다. 북계에는 영새군이 없는 대신 보창군이 있는 반면 동계에는 보창군이 없는 대신 영새군이 있다. 이들은 주진의 성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비군이였다.

2. 高麗의 治安 機關

1) 高麗의 治安機關의 性格

고려는 통일신라의 불교를 승계하여 이를 기초로 불교를 더욱 발전시켜 국교로 삼아 고려민의 중심 사상과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으로 지배력을 권고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불교 사상은 당시의 법령의 제정과 적용되어 가능한 한 관용성을 발휘하여 가혹한 형벌을 행하는 일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보통의 사형에 처할 반역의 죄인이라도 원도(遠島)에 유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살생을 금하는 불교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불교사상의 저변에 통치 구조는 유교사상을 접목하여 치국의 지도원리로 삼았다. 이것은 태조가 저술한 정성(政誠) 1권과 계백료서 8편에 신자(臣子)에게 예절을 알리게 함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보면 유교경전에 의거 대의 명문과 군의충신 및 상경하복(上敬下腹)등 봉건국가의 기강을 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치안조직의 성격은 고려사회의 지도이념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불교는 수신(修身)의 도(道)로, 유교는 치국(治國)의 본으로 장려되었기 때문에 유교의 발전은 불교와의 조화 위에서 성립되었고, 당시에 도교와 풍수지리, 도참사상도 유행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력을 볼 때 불교에 비견할 만한 것은 못되었다.

2) 高麗의 中央 治安機關

(1) 병부(兵部)

성종, 목종대에 걸쳐 2군6위의 제도가 완비되고 이중 금오위가 주로 수도에 경비, 순검 기타의 임무를 담당 수행하여 치안을 담당하여 치안확보,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였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사법, 행정 등 경찰업무의 전부는 아니었다. 따라서 병부, 형부, 어사대 등의 중앙 행정기관이 경찰업무의 일부를 분장하였을 것이다.*****

***** 김형중, 한국중세경찰사, 수서원, 1998, p88

(2) 형부(刑部)

법률, 소송, 형옥 등의 정무를 관장하던 육부중의 한 관서로서, 주로 민·관등의 모든 분쟁을 조사하고 처형하였던 곳으로 오늘날 사법 경찰의 많은 부분이 이 형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형부의 직속 기관으로는 노비, 관청의 장부와 문서, 결송(決訟)을 관장하던 도관이 있었고, 형부의 예하 관서로는 전옥서, 경시서 등의 관서가 있었다*.

(3) 도궁(都宮)

관노비 및 노비의 문서와 이에 관한 소송 및 경찰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형부의 직속 기관이었다.

(4) 어사대(御史臺)

어사대는 관원(官員)의 비리를 규탄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관부로서 성종14년에, 현종대는 5년에 금오대, 6년에 사헌대, 14년에 어사대로 개칭하였고 원의 간섭시기인 충렬왕대는 감찰사, 24년에는 사헌부로, 충선왕3년에는 감찰사, 공민왕5년에 어사대, 11년에는 감찰사로, 18년에는 사헌부로의 명칭변경이 있었다. 보통 어사대의 업무는 포자(布子: 관에 납부하여 인쇄한 포)에 대해 도장을 관장하는 관서로 경성 내에서는 경시서가 이를 주관하였고, 어사대가 이를 조사하였다. 승속(僧俗)들이 술을 파는 등 풍속을 어지럽힌다 하여 어사대와 금오위로 하여금 금하게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지금의 경제·풍속 경찰과 경찰 내에서의 감사실 혹은 청와대 사정팀의 임무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5) 가구소(街衢所)

형옥기관(刑獄機關)으로서 1076년(순종30)에 설치되어 가구사(街衢使)·가구별감 등의 관직을 두었다. 『高麗史』 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는 설치연대만 기록하였을 뿐 조직·기능 등에 관한 기사는 없으나, 보현원(普賢院)에서 난을 일으킨 정중부(鄭仲夫)등이 수도 개경에 이르러 맨 먼저 습격한곳이 가구소인 것을 보면 단순한 형옥 기관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으로 짐작된다. 충렬왕때 찬성사(贊成事) 차신(車信)등을 가둔 것으로 보아 잡범 보다는 비중 있는 인물들을 재판하고 처단하며, 고문도 한 것으로 보인다.

* 김형중, 상계서, p89

** 김형중, 상계서, pp94-95

(6) 금화원(禁火員)

고려 초기부터 개성과 각지방 창고 소재지에 금화원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소방치안 조직의 효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금화원 제도는 문종20년 2월 개경의 큰 창고인 운홍창의 화재를 계기로 설치하였는데, 당시 왕은 모든 창고의 일반 관리 외에 방화전담관원과 이속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근무상태를 어사대로 하여금 수시로 감독케 하여 근무 결락시 선금후문케 하였는데, 이는 당시 고려가 농경사회이고 이에 미곡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금화원 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가 있겠다.

3) 高麗의 地方 治安機關

고려시대 지방치안기관으로는 5도의 안찰사, 양계의 병마사가 있고 부·목·군·현에 수령이 있었으나 아직 조선시대처럼 중앙권력이 확고히 지방에까지 정착되지 못했다.

(1) 안찰사·병마사(按察使·兵馬使)

고려시대의 지방관제는 초기의 12목에서 수차례 변경 후에 5도 양계로 정착되어 도에는 안찰사, 계에는 병마사가 있었고, 그 밑의 부목군현에는 수령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관제의 장인 지방관들은 중앙권력이 확고하게 미치지 못하는 못했지만 그 업무에서 행정·사법·군사·경찰 등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사법 및 행정치안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병마사는 양계에서 국방상 일찍이 설치되었는데, 관할구역의 군사 및 행정사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었다. 죄수에게도 주진에서는 각계의 병마사가 수시로 감찰하여 가벼운 죄는 재량으로 처리하고, 중한 죄수는 구속 수감한 일시를 기록하여 중앙에 보고하게 하였다***. 치안을 문란하게 하고 백성을 살상하는 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처럼 실제 치안권 및 사법권을 동시에 행사하여 지방 치안관청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안찰사는 5도의 장으로 임명된 지방관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 치안기관이 확립된 것은 고려 후기이며 고려전기에는 중앙정부와 군현(郡顯) 사이의 중간기구로

*** 고려사 권84 지 권38, 형법1(형법지) 직제조

**** 고려는 초기 이래 지방장관을 절도사(節度使)·안무사(按撫使)·안찰사(按察使)·도부서(都部署) 등으로 부르다가 1276년(충렬왕 2) 안렴사로 고쳤다. 1298년에는 지역이 넓은 충청·전라경상 3도에 안렴부사(按廉副使)를 두어 안렴사를 보좌하게 하였고, 동계(東界 : 함경도)의 안집사(安集使)를 없애고, 교주도(交州道 : 강원도)의 안렴사가 이를 겸하게 하였다. 1389년(창왕 1)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고쳤다가 1390년 각 도에 관찰사경력사(經歷使)를 두었으며, 1392년 다시 이를 안렴사로 바꾸었다.

서는 아직 정비되지 못하였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기는 개성부(開城府)에서 직접 통치하는 등 전국적 지배방식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점은 고려 전기의 지방제도의 미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주현군(州縣軍)

지방관인 병마사와 안찰사 밑의 군. 현에는 주현군이 있었는데, 5도의 주현군은 수령의 지휘를 받아 치안과 외적에 대한 방어 및 공역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3) 수령(守令)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들의 자치에 맡겼다가, 후에 12목을 두면서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점차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전국에 약 500여 개의 군·현이 존재했는데 모든 군현에 외관이 파견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군현에는 원칙적으로 수령이 파견되어 군현을 통치하면서 공물의 진상이나 죄수의 심문을 맡게 하였다. 따라서 수령은 자기의 관할에서는 지방관으로서 사법권과 치안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군현에는 그 지방출신이 호장·부호장 등 향리에 임명되어 수령 밑에서 실제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호족출신으로 조세·부역·소송 등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수령을 보좌하였다. 이들은 군현에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실제 치안이나 사법의 실제 집행을 하였다*.

(4) 사병(司兵)**과 촌장(村長)***

주목이 설치되기 전인 고려 초기 성종때까지는 지방의 치안행정이 거의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된 만큼 치안 조직 역시 자치적인 향직 단체의 일부에 속하였다.

향직 단체의 구성은 최고책임자인 당대등, 부책임자인 대등이 있고, 그 밑에 중앙 관서명을 그대로 사용한 낭중·원외랑·집사 등이 있어서 지방의 행정을 총괄하고, 중요한 부분인 군사·재정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중앙의 관서명인 병부·창부가 있어 그 주무관인 병부경과 창부경이 그 지방의 군사·재무에 관한 일을 책임지고 행하였다.

*****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93, p.190

* 경찰대학, 한국경찰사, 2003, p.63

** 고려시대에 군사의 일을 맡아보던 향리의 관사(官司)로서,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吏職)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사병은 병부를 고친 이름으로서, 성종, 이전에 지방세력은 중앙관아의 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병에는 향리직으로 병정(兵正)·부병정(富兵正)·병사(兵史)가 속해 있었다.

*** 고려시대 촌락공동체 우두머리로서, 각 주(州)·현(縣)의 이속(吏屬)과 함께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987년).

범죄의 방지·질서 유지를 위해 무력이 필요하던 당시 지방 실정에서는 병사를 맡은 병부가 지방의 치안 업무를 맡은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각 주·군·현의 병부경은 연상·유내 등의 관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촌의 대감·제감의 협력을 얻어서 관내의 치안을 확보하였다.

대감과 제감은 성종 9년에 촌장·촌정으로 고쳤는데, 촌의 질서 유지가 그의 영향력에 있었으므로 그 지역 내에서의 치안행정의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즉, 촌내의 치안행정은 촌장이 주관하고 촌정이 보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촌의 책임자인 촌장과 촌정도 군 또는 현이라는 향직 단체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군·현 향직 단체의 장인 당대등 및 그 이하의 관원들과도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했고, 특히 병권과 경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병부와는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성종대에 12주목을 설치하는 등 지방행정의 통제강화를 도모하면서 향직 단체의 개편도 이루어 졌는데, 군·현 향직 단체의 장인 당대등을 호장, 대등을 부호장으로 개칭하고 낭중을 호정, 원외랑을 부호정, 집사를 사로 개칭하여 중앙부서와 구별하였다.

그리하여 군·현의 사병과 촌장은 주·목의 장의 지시·감시를 받아 가면서 군사·치안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5) 현위(鉉尉)

지방경찰기관의 하나로서 현위를 수반으로 하는 위아의 설치가 있었는데 이병도 박사가 현위를 경찰서장, 위아를 경찰서로 밝힌바 있다*****.

현종 때 주·군·현의 대대적인 통·폐합과 함께 증설이 있었는데 현을 중심으로 볼 때 20현으로 통합되었고, 여기에 배치된 한 명의 현령이 종전의 20여개 현 지역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에 현종은 전국 20개 현에 현령을 배치하면서 별도로 치안관을 임명 배치하여 치안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위를 배치하였을 것이다.

이런 치안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당의 군·현 제도의 도입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현위에 대한 직제를 두었다는 기록은 문종때 처음 나온다. 그러나 그 원년에 이미 현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현위의 임명 및 품계에 대한 규정은 문종 이전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제도를 모방한 직제 완성 시기가 현종 때임을 감안하여 현위의 제도는 문종이 아닌 현종대에 설치가 시작되어 문종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를 확립한 것이 바로 문종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허남오, 전계서, p.104~105

*****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1, 1972, p.98~101, p.159~162

* 허남오, 전계서, p.105

현위의 임무는 현 내의 비행, 범죄예방 및 그 처리와 함께 치안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의 질서 유지 임무이다.

사회혼란과 흉작, 지방 수령 등의 착취가 심했던 고려 초기부터 각종의 난과 무신 정권기로 인한 각종 하극상 등은 사회를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현위는 평상시에는 치안유지나 대중교화에, 비상시에는 작전임무까지 수행했던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6) 순관(巡官)

고려 초기부터 순관이라는 지방관원이 있었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교통·연락의 임무를 담당하였던 기관의 역할을 관할하던 관원이었다.

역참은 당시 육상교통의 유일한 기관이었는데, 이는 신라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고려 때 그 시설과 운영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즉, 전국에 525개의 역을 두고, 이를 22도의 관할에 두었고, 도로를 그 중요도에 따라 대·중·소의 3로(輅)로 구별하고, 역도 그 위치와 일의 경중에 따라 6등급 즉 6과로 나누었다. 이 역로의 구간을 나누어 10여개의역을 1도로 하였고, 순관은 그 한 도의 책임 관원으로 그 관할하는 여러 역을 순찰 감독하였다.

각 역의 주요 임무는 공문의 전달, 관물의 압송 및 출장관원들의 편의 제공 등이었고,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역마다 역리·역정 및 역마가 배치되고 필요한 토지도 있었다.

역의 중요 임무는 군사정보의 전달이었으므로 순관은 병부에 속하였고, 모든 공무상의 기밀보전과 함께 이에 따르는 연도경비와 정보사찰 등의 군경 업무도 겸했다. 고려 말기에 관역사를 역승 또는 별감으로 고치기도 하였고, 이는 조선에 계승되어 찰방이라고 하였다. 역참(驛站)과 함께 강안 도수처에는 나루인 진(津)이 있고, 진졸(津卒)이 배치되었는데, 이 진에 대한 순찰 및 감독도 순관의 임무이었다.

(7) 지방별초(地方別抄)

중앙 파견의 별초군인 경별초에 비교되는 것이 지방별초이다. 그러므로 야별초의 지방활동은 중앙파견대에 의해서만 행해지던 것이 아니며, 지방에도 주·부·군·현 단위로 야별초가 조직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고려사 백관지 외조직에 보면 문종 때 지방 각 관아의 인원 및 품계를 정하면서 현에는 7품관인 영1인과 8품관인 위 1인을 두었다는 직제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다.

*** 고려사 문종세가를 보면 문종 즉위 원년7월조에 이미 현위의 기사가 나오는데 황해도 장연현에서 문환이라는 주민이 신의 지시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와 여동생, 어린이의 4명을 살해하여 내다버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형부에서는 현령 최경원과 현위 최승성이 선정교민을 잘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 하여 이들의 처벌을 상주하여 파직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 현위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 되고 고종43년에 폐지되었다.

지방별초는 ‘고려사’에 동경별초에 관한 것으로 신종 5년 10월조에 ‘동경별초군이 영조별초군과 사이가 좋지 않아 운문의 적당 및 부인·동화 양사의 승도들을 끌어서 영주를 쳤다’는 기록이다. 이러한 지방별초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야별초로는 그 행동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치안유지에 필요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조직되었다. 실제로도 지방별초들은 혼란이나 전쟁 중에 각 지방의 질서를 유지하고 적으로부터 지방의 방어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고려가 친몽정책으로 바뀌면서 배몽향전주의의 삼별초는 해산되었고, 후에 정국과 사회가 안정되면서 지방별초도 해산되었다.

(8) 사록(史錄)과 법조(法曹)

유수관, 주목 및 대도호부에는 8품관인 법조(8품관) 위에 사록참군사(7품관) 또는 사록겸장서기 1인씩이 있었고, 그보다 작은 중(中) 도호부와 방어진에는 사록이 없고 판관(6품관) 밑에 바로 법조만이 있었다. 그 아래 주군에는 지사 밑에 판관만이 있었고, 사록도 법조도 없었으며, 다시 현에는 7품 이상의 현령과 8품관의 현위가 있었다. 따라서 주군에는 판관이, 부·목에는 사록·법조가 치안 및 사법업무를 담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사록이나 법조는 직접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면서 경찰 업무 및 사법 업무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여러 실무를 모두 담당하였을 것이며, 그 권한도 상당했을 것이다. 또 행정 및 치안을 분리하여 행하던 현령보다 오히려 지방행정업무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III. 高麗時代의 侍衛制度

1. 高麗前期

1) 王建의 中央軍

왕건의 중앙군은 후삼국 통일의 직접적인 힘이 되었고 고려 경군(京軍)조직의 토대가 되었다. 신라 말과 후삼국 시대의 모든 지방 성주들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 궁예(弓裔)가 거느리던 모든 병력을 자신의 군대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왕건에게 내부하여 오는 여러 장군의 군대도 있었고, 지방의 성주들도 왕건에게 귀부함과 아울러 자기의 사병인 군대의 일부를 중앙군에 편입시

***** 경찰대학, 전계서, p.84~85

켰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태조 왕건의 중앙군은 중군(中軍)·좌강(左綱)·우강(右綱)의 3군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서의 중군은 태조 왕건의 친위군이었을 것이 분명하며, 중군 3천명은 후일 왕의 친위군인 응양군(鷹揚軍)이었을 것이며, 중군 3천명은 후일 왕의 친위군인 응양군·용호군의 2군으로 통폐합되었던 것이다.

2) 2군(軍) 6위(衛)

고려는 성종(成宗)부터 목종(穆宗)에 걸쳐 2군 6위의 중앙 정규군이 편성되었다. 2군은 때로는 근장(近仗)이라 불리던 친위군 또는 시위군으로서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을 말한다. 응양군이 용호군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모두 각각 상장군과 대장군을 두고 있었다.

6위는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號衛), 흥위위(興威衛), 금오위(金吾衛), 천우위(千牛衛), 감문위(監門衛)를 말한다. 6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력부대는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의 3위이었다. 이 3위는 도성인 개성의 수비는 물론 교대로 변방에 나아가 경비하는 임무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금오위는 비순위(備巡衛)라고도 칭하였듯이 경찰의 임무를 맡았으며, 천우위는 의위(儀衛)의 임무와 왕에 시종(侍從)하는 임무를 맡았다. 2군 6위는 1,000명의 군인으로 편성된 영(領)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45명이었다.

3) 내순검군(內巡檢軍)

고려 인종(仁宗)때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개경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성(都城) 안을 좌·우로 나누어 각각 순금사(巡禁史)를 두었었는데, 의종(毅宗)때에 와서 숙위(宿衛)*를 더욱 강화하고 내금검(內金檢)이라 하였다. 원래 부병(府兵)**을 궁궐 안에 주둔시켰던 데에서 내순검은 발단되었으나, 그 후로는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선발하여 자의(紫衣)에 궁검(弓劍)을 착용하고 주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순검지유(巡檢地榆)나 순검도령(巡檢都領)의 지휘를 받아 금중순위(禁中巡衛)는 물론이고 왕의 호가(扈駕) 출입시 호종시위(扈從侍衛)하였으며, 모반이나 반역을 피하여 궁궐 문에 투서하는 자들도 체포하였다.

한편, 무신난 이후 정권이 무신에게 돌아가면서부터 순군검은 무신세력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중부 일파인 이의방·이고 등이 태자궁에 이르러 행궁별감(行宮別監)*** 등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이후 순검제도는 군사제도의 이완과 더불어 그 기능을 잃고 최씨 정권의 가병(家兵)이 되면서 야별초(夜別抄)의 성립과 함께 순검군의 작용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숙위란 지금의 경호에 해당한다.

** 부병이란 농민에서 군인을 뽑아, 농한기에 궁궐을 경비하던 농민군인을 말한다.

*** 행궁별감이란 임금이 거동할 때 머무는 별궁지기이다.

2. 高麗 武臣執權期

1) 6번도방(六番都房)

무신난을 일으켜 집권했던 정중부는 명종(明宗) 9년(1179) 26세의 청년 장군 경대승(慶大升)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므로 무인들 사이에는 다시 무인의 지위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정중부를 찬양하고 경대승에게 적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경대승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대 백 수십 명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이를 도방이라 하였다.

도방은 단순한 신변보호기관으로만 그치지 않고 비밀탐지, 반대세력의 숙청 등에 도 가담하였으며, 주인의 세력을 배경으로 약탈과 살상을 감행하였으나, 경대승이 명종 13년(1183)에 병사하자 도방은 일시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충헌(崔忠獻)도 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국왕의 폐립을 자행함으로써 주위에 적이 많이 생겼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 횡포를 잘 알고 있었기에 불의의 변을 당할까 두려워 최충헌은 자신의 신변의 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해 전에 경대승이 설치했다가 폐지된 도방을 부활시켰다.

최충헌은 문무관·한량·군종을 막론하고 기운이 센 사람을 불러들여 6번도방으로 나누어 매일 교대로 그의 집을 수직(守直)****하게하고 그 이름을 도방이라 하였다. 그가 출입할 때에는 6번이 모두 합하여 호위하였기 때문에 그 위세는 마치 전쟁에 나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최충헌의 도방을 6번도방 이라고 하였다.

2) 내외도방(內外都房)

최충헌의 6번도방은 그의 아들 최충때에 한층 더 강화되었다. 최우는 집권하기 이전부터 수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가 집권하고 나서 6번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강화하였다. 내외도방의 조직은 최우가 집권하기 전부터 거느리던 그의 사병으로 내도방을 조직하고, 그의 부(父) 최충헌의 도방을 계승하여 외도방을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내도방은 최우와 그의 집을 호위케 하고, 외도방은 그의 친척과 기타 외부의 호위를 맡게 하였다.

내외도방은 각각 6번으로 편성되어 교대로 숙위(宿衛)하는 것 이외에,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의 정벌 및 외적의 방어·토목공사에 동원, 비상시의 비상경비 등도 맡았다. 이러한 도방은 최우의 아들 최항(崔抗)에 이르러 그 분번제(分番制)를 더욱 확장하여 36번으로 조직하였다. 이 36번 도방은 최항의 아들 최의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명종(明宗) 45년(1258) 불과 집권 2년만에 살해되어 최씨 정권이 몰락됨으로써

**** 수직이란 말아서 지킨다는 뜻이다.

도방의 병력은 왕권 밑에 흡수되는 듯하였으나, 그 후 집권자인 김종·임연 등에 의해서 다시 계승되어 신변호위 기능을 하였다. 이들이 제거되면서 정중부 이래의 무신정권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3) 서방(書房)

서방은 문인들로 구성된 최씨 정권의 숙위기관 이었다. 서방은 최우가 고종 14년(1227)에 설치한 것으로서 최우의 문객 가운데 이름난 선비들을 3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서방에 당번 근무케 하였다. 이는 최우가 문인들은 우대하여 무신정권 하에서 학대받던 문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였을 뿐 아니라, 문인들을 고사(故事)에 밝고 식견이 높아 정치에 있어서 자문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서방이 설치됨으로써 최씨의 숙위기관은 문·무 모두를 갖추게 되었다. 즉 하나는 무인들이 교대로 당번을 서는 도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인이 교대로 당번을 서는 서방이었던 것이다. 최씨 정권은 서방을 지력(智力)의 숙위기관으로 활용하였지만, 문인들에게는 무인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안식처가 되었다. 서방은 도방 및 삼별초와 그 운명을 같이하였다. 즉,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에는 금중(金俊)이 이어 받았고, 다시 임연(林衍)을 거쳐 임유무 때까지 존속되거나 폐지되었다.

최씨 정권이 마지막 집권자 최의가 피살된 지 한 달 후인 고종(高宗)45년(1258) 4월 왕이 왕륜사(王輪寺)에 행차할 때 각번 도방과 야별초·신의군·서방이 어가를 호위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서도 도방·삼별초·서방 등이 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방은 무신정권 말기인 원종(元宗) 12년(1271) 임유무 때까지 존속되었던 것이다.

4) 마별초(馬別抄)

마별초는 최우가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한 기병대로서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씨 정권 몰락과 더불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마별초도 정방이나 서방과 같이 몽고와의 관계가 긴장되어 시국의 긴박감을 느끼게 된 최우가 그의 집권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몽고의 제도를 참작하여 조직한 것인데, 그 명칭이 의미하듯 기병(騎兵)의 별초(別抄)*****인 것이다.

마별초도 도방과 함께 최씨 정권의 가병의 일종으로, 마별초와 도방은 기병과 보병으로서 나란히 최씨 정권의 호위기관으로 양쪽 날개와도 같은 것이었다. 즉 도방은 보병의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마별초가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다는 내용으로 보아 호위기관으로서 사명뿐 아니라 의장대로서의 기능도 하였던 것이다.

***** 별초란 가려서 뽑은 특수 부대를 말한다.

5) 삼별초(三別抄)

삼별초라 함은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夜別抄)가 좌별초(左別抄), 우별초(右別抄)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神義軍)을 합하여 된 것이다. 본래 야별초는 최우 때 방범순찰이 목적이었으나, 뒤에 몽고에 잡혀갔다가 도망해온 자들로 신의군을 구성한 후, 즉 삼별초가 조직된 후부터는 군사와 치안 그리고 형옥(刑獄)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한편 야별초 내지 삼별초는 친위대로서의 구실과 도성의 수비도 맡았는데, 「고려사(高麗史)」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고종(高宗) 40년(1253)에 몽고 사신 몽고대(蒙古大)등을 맞이하기 위하여 왕이 강을 건너 승천부(昇天府)의 새 대궐에 나아가 그를 맞이하였을 때 야별초 80명이 평복 속에 갑옷을 입고 뒤를 따랐던 바 있고, 원종(元宗) 원년(1260)에 뒷날 충렬왕(忠烈王)이 된 태손(太孫)이 문무백관과 더불어 삼별초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제포(梯浦)에 나아가 몽고에 갔다 돌아오는 원종을 맞이하였던 바 있으며*, 1270년(원종 11년)임금과 일부 문신들이 몽고와의 야합을 통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고 재 항쟁을 결의하였다**.

3. 高麗後期

고려는 건국 후 약 2백년간은 중앙집권제도의 확립과정에서 유교적인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과거제도를 실시해 나감에 따라 유신(儒臣)의 지위가 높아졌다. 이에 반하여 무신(武臣)의 지위는 저하되고, 그들의 불만이 높아져 드디어 무신난이 일어나 무신전단(武臣專斷)의 정치가 행하여지기에 이르렀으며, 그 실질적인 정치운영은 중방(重房)에서 이루어지다가 정방(政房)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통치기구의 개편은 충렬왕 이후 몽고의 압력 하에 들어가면서 현저해졌으니, 중앙관제는 최고행정기구인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합하여 검의부라 고치고, 상서 6부를 통폐합하였다. 그리고 지방제도의 가작 근간이 되는 것은 도제(道制)인데, 이는 여러 차례의 변천이 거듭되었다. 즉, 종래의 10도는 수차의 폐합과 분리를 거쳐서 고려말에 와서는 8도의 구획이 이루어 졌으며, 이는 그대로 조선왕조에 계승되었다.

1) 순마소(巡馬所)

순마소는 고려의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원나라에 지배되면서 몽고의 제도에 따라

* <고려사> 권25 원종 1년 3월 壬午條

** 김창호, 한국경호발달사, 백산, 2006, p.91

설치된 것으로 그 본래의 기능은 도적방지·부고자나 포악자 등의 단속, 변방 수비 등이었다.

충렬왕 이후로는 원나라의 부마국(鮑馬國)으로서 원나라 왕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순마소 역시 원나라 황제나 공주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나라의 명령이나 공주의 지시에 어긋남이 있는 자는 모두 순마소에 구속·수감하였다. 이처럼 순마소는 치안유지를 위한 본연의 임무 이외에 왕권에 봉사하고 권신에게 이용되었으며, 간신배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 뒤 순마소는 충렬왕 26년 12월에서 33년 3월 사이에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개편되었고, 이를 흔히 순군부(巡軍府)라 통칭하였다.

2)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순군만호부는 원나라 제도에 따른 군제(軍制)로서 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萬戶)·부만호·진무(鎭撫)·천호(千戶)·제공(提供)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순군만호부의 기본 직능도 순군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방도금란(防盜禁亂)이 주된 임무였으나, 일반적 치안유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도리어 전체적인 왕의 뜻을 거역한 자에 대한 징계·처벌을 담당하였다.

순마소는 순군만호부로 개편된 이후 원나라 세력에 지배당하는 동안에는 흔히 왕권을 싸고도는 정쟁(政爭)의 도구가 되었고, 한편 원래의 방도금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왕가를 위시한 세력가들에게 추종 봉사하는 기관이나 다름이 없었다.

3)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

순군만호부는 공민왕 18년(1369)에 사평순위로 완전히 개편되었으며, 종래의 만호·천호 등의 직제도 제조 1인·판사 3인·참서관 4인·순위관 6인·평서관 5인 등으로 개편되었다. 사평순위부의 실제적인 기능은 역시 방도금란으로서의 모역, 관료의 탐폭(貪暴)과 태만 등을 바로잡고 징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역이나 왕실의 안위에 직접 관련되는 사건은 모두 사평순위부에 구속·수감되며 처형되었다. 특수한 역할로는 사평순위부에 궁중 잡희의 도구가 있어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도구들을 갖추어 동원케 하였다.

순군만호부의 명칭 자체는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얼마동안 계승 존속되다가 순위부·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거쳐 왕의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로 바뀌었다.

4) 성중애마(聖衆愛馬)

고려 중엽에 이르러 고쳐 초기의 병제가 무너지면서 변칙적으로 특수 부대가 나타나는데, 그 후 몽고의 영향 하에 있는 동안 구체화되어 궁실을 숙위하는 별도의

특수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성중애마는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중애마는 공민왕 이후 잦아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전투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궁실의 숙위를 위하여 강화되면서 일반 군사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즉, 성중애마는 전투에 대비하는 순수한 전투부대가 아니라,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근시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상당한 교양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성중애마는 관인신분으로 간주되어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마치면 다른 관직으로의 진출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중애마는 순수한 직업적 전투부대는 아니었으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 군사력의 일익을 이루고 있었다.

성중애마에는 충용사위(忠勇四圍)·근시사위(近侍四圍)를 비롯하여 사순(司楯)·사의(司衣)·사옹(司饗)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충용4위는 고려 공민왕 5년(1356)에 의관자제(衣冠子弟)로서 볼모로 원나라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홀치라는 숙위 부대를 이루었던 것인데, 고려 우왕 4년(1378)에 이르러 근시4위로 개칭하였던 것이다.

성중애마는 상식국(尙食局)·상약국(上藥局)·상사국(尙舍局)·상승국(尙乘局)·상의국(尙衣局) 등 6국의 요원들로 확대되어 궁중의 군사력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조선 건국 초까지 존속되어 조선 태종 이전까지의 군사적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며, 성중애마는 고려말 대표적인 시위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高麗時代 侍衛制度의 機能

시위군은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임무만 수행하던 기관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에 있어서 질서유지 및 왕궁 경호의 임무를 수행하던 것으로, 첫째, 왕실의 숙위가 주된 임무였다. 여러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高麗史 卷76 百官志1, 高麗史 卷82 兵志2 宿衛條) 고려초기 시위군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왕궁을 숙위, 유지하는데 있었을 것이며, 둘째, 왕권(王權) 및 왕실(王室)세력(勢力)의 보위(保衛) 내지는 전투적(戰鬪的) 기능(機能)을 대행하였다. 고려초에는 호족의 사병을 견제하고 왕실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호족의 사병과는 구별되는 친위군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무신집권기의 도방과 내도방은 지금의 사설 신변보호기관으로서 비밀탐지, 반대세력의 숙청 등에도 가담하였으며, 정적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신변의 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기능도 하였다. 셋째, 국왕(國王)이나 왕실(王室)세력(勢力)의 행차(行次)시 의장대(儀仗隊)로서의 기능(機能)도 대행하였다. 이는 <고려사절요>에서 보여지듯이 고종 16년(1229년) 11월 최우가 가병을 사열하였는데, 그때 도방과 마별초의 안마, 의복, 궁검, 병갑 등이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다는 내용으로 보아 의장대 역할과 국왕과 왕실세력의 존엄이나 권위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기능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IV. 結 論

이상에서 고려시대의 시위군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시위군(親衛軍)은 신라말부터 고려건국 후 호족적(豪族的) 존재에 불과한 왕실에 안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조 때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위군이라는 것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상당한 신임을 필요로 하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먼저 조직되는 군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왕은 전체군주(專制君主)로서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군사(軍事)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명령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로서의 지위, 또는 왕권(王權)강화(強化)책(策)의 한 고리로 이해되지만 지방(地方)호족(豪族)들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태조(太祖)의 현실적 필요성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으로, 국왕의 왕권 보호와 집권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해 최정예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대상황별 적절한 시위활동, 즉 시위활동을 추구하였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시대적 환경은 새로운 시위조직을 탄생시키고 끊임없이 변천해 왔음을 문헌고찰에서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상관성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응양군, 용호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천우위, 금오위, 감문위, 좌우위, 신오위, 홍위위)는 수도 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이는 경대승이 정중부 일당을 제거한 후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만들었으며, 결사대를 백 수십명을 모아 긴 목침 큰 이불로 함께 침식, 행동케 하여 불의의 변을 막기 위하여 숙식 경비케 하였다.

또한 최씨정권은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최씨 일가를 떠나서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왕권보호와 집권세력

의 권력유지를 위해 치안 및 경비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경찰대학(1998). 한국경찰사,
 경찰사편찬위원회(1995). 경찰50년사. 경찰청.
 국방군사연구소(1993). 한민족전쟁통사(韓民族戰爭通史). 고려시대편.
 국방부 전쟁사 편찬위원회(1990). 러.원전쟁사(麗.遠戰爭史).
 김두현(2001). 『경호학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김창호(2006). 『한국경호발달사』 서울 : 백산출판사.
 김형중(1990). 『한국중세경찰사』 서울 : 수서원.
 _____(1999). 『한국중세경찰사』 서울 : 수서원.
 내무부치안국(1972). 『한국경찰사1』 내무부치안국.
 박범래(2003). 『한국경찰사』 경찰대학출판사.
 변태섭(1993). 『한국사통론』 서울 : 삼영사.
 _____(2001). 『한국사통론』 서울 : 삼영사.
 신형식(1981).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이중수(1997). 「조선왕조시대 시위제도의 사적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행정대학원.
 이기백(1968). 『고려병제사연구』 서울 : 일조각.
 _____(2001). 『고려전기군제연구』 서울 : 일조각.
 _____(2002). 『한국사신론』 서울 : 일조각.
 임규손(1971). 『고려왕조의 경찰제도』 동국대법정대학.
 장동익(1986). 『고려전기의 선군(고려사의 제문제)』 서울 : 삼영사.
 정경현 외(1993). 『군사조직.(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중세사학회(1997). 『군사제도(고려시대사 강의)』 서울 : 늘함께.
 허남오(1998). 『한국경찰제도사』 서울 : 동도원.
[http : www.chungdong.or.kr/middroom/syshim/한국사/한국사21.htm](http://www.chungdong.or.kr/middroom/syshim/한국사/한국사21.htm)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Security System of Goryo Period

Kim, Chang-Ho · Min, Jae-ki

It was started that Shiwe-goon was organized from Shilla-end to Goryeo foundation a country in powerful families existence merely royal household by stably plan means in the reign of Taejo. Generally Shiwe-goon was dutie king' personal danger of protection.

Shiwe-goon was organized castle of guarding, stand by king and royal household side armed strength to going on a trip and general armed-organization was collapsed for Goryeo-end continued existence.

Goryeo era of Shiwe-organization was divided central army and region army. Two-goon(Eungyang-goon, Yongho-goon) was undertaken king of Shiwe army and six-we(Chunwoo-we, Geumoh-we, Gammoon-we, Jeoawoo-we, Shinoh-we, Hongwe-we) was undertaken capital of guard and the border of defense duty.

Central army of commanders was called Sangjanggoon, Daejanggoon. Sangjanggoon and Daejanggoon was discussed military officer of conference apparatus in Jungbang. Jungbang was got afterward Mooshinjungbeon happened military of statesman grasping political power with authority a main stay.

Mooshinjungkwen era was appeared modernistic mean of privately guarding organization in Dobang and Naedobang.

According as Shiwe-organization was charged military organization as a part of sovereign power and grasping strength of authority- maintenance for security and guarding duty.

As a conclusion, national sovereign of guard was achieved not only personal life and body guard protection but also country of welfare protection in country-welfare dimension an inch of non-error. Also national sovereign of guard was considered guarding apparatus of allowance the largest duty and country-welfare direct connection with actual fact recognition in constancy effort.

Key Words : Shiwe, Shiwe-goon, Central Army, Jungbang, Dobang